

환경부 공고 제2014-06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물질과 같이 잠재적으로 인체·환경에 위해 요인이 되는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이 “No Data, No Market(화학물질의 정보 없이는 시장출시 없다)”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위해성평가 및 유해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789호, 2013. 5. 22.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평가위원회 구성·운영방법 구체화(안 제3조~제6조)

모든 위원은 비상임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도록 하는 등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을 구체화함.

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부여(안 제9조)

화학물질의 등록이 없이도 제조·수입할 수 있는 등록유예기간을 원칙적으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한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함으로써 등록 예정자가 원활하게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등록면제확인 대상 화학물질의 구체화(안 제10조)

시약, 공정개선·개발, 적용분야 시험, 시범제제 등 실험분석용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과 일정한 요건의 저우려 고분자화합물 등을 등록면제확인 대상으로 구체화함.

라. 등록신청자료 제출의 생략이 가능한 화학물질 구체화(안 제12조)

연간 1톤(“20년 0.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구조가 유사하여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는 등록신청시 일부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산업계 편의와 중복시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마. 허가물질의 지정기준 등의 구체화(안 제19~제21조)

발암성 등에 관한 허가물질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허가물질의

허가유예기간은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사용주기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허가물질의 지정 전에 사전 예고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계의 원활한 준비 및 대체물질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바.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처리업무의 구체화(안 제24조)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정보제공 등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구체화하고, 기업의 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 도구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시스템 관리를 위해 정보처리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사. 녹색화학센터 지정요건 및 절차 구체화(안 제27조~제32조)

녹색화학센터는 조직·시설·전문인력 등의 요건과 사전공고의 절차에 따라 지정하고, 환경부장관은 녹색화학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사후 보고를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과(전화 : 044-201-6771, FAX : 044-201-6786, 전자우편 : imvo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분리중간체”란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분리중간체”란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3. “고분자화합물”이란 1종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각 분자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이며, 3개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루며, 이러한 분자가 50% 이상이고,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50%

를 초과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중량비 2% 이하의 단량체를 제외한 고분자화합물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분자화합물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4. “단량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분자와 결합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하는 화학물질을 말하며, 반응물을 포함한다.

5. “수평균분자량”이란 고분자화합물의 모든 분자의 총 무게를 총 몰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제3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모든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이 결원된 경우 환경부장관은 결원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평가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 제품의 생산·수입자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5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의장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평가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때
- ③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목적과 안건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

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⑤ 평가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 또는 회의록, 회의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⑦ 평가위원회는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다음 보관하여야 한다.
- ⑧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평가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1. 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
 - 2.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배부
 -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 4. 그 밖에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 ⑩ 제9항에 따른 사무국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위해성평가위원회
2. 위해우려제품관리위원회
3.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화학·환경·보건·독성·경제·정책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 화학물질 및 제품 관련 산업계·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화학·환경·보건·독성·경제·정책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평가위원회 위원이 추천하는 사람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7조(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법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약 등 과학적 실험, 분석 또는 연구를 위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2.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수입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 가. 화학물질 또는 제품·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 나. 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 다.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 라.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상품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3.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분리중간체

제8조(제조 등의 변경보고)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의 정보(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가 변경된 경우
 2.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는 별표 1에서 정한다.

제9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한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부여된 등록유예기간 만료일 전 2개월 동안 등록신청을 한 경우 등록유예기간은 제1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로 연장된다.

제10조(등록면제확인 대상)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면제확인대상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약 등 과학적 실험, 분석 또는 연구를 위해 연간 단위로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그 화학물질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용으로 한번에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그 화학물질
 - 가. 화학물질 또는 제품·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 나. 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 다.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 라.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상품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을 처음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그 화학물질
 - 가. 수평균분자량이 10,000 이상인 고분자로서 1,000 미만의 분자의

함량이 5%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나. 수평균분자량이 1,000 이상에서 10,000미만인 고분자로서 분자량이 1,000 미만이 분자의 함량이 25%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4.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기본물질과 기본물질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적으로 표면 처리된 화학물질을 처음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그 화학물질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 중에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면제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다만, 고체 상태로만 사용되며, 물에 녹지 않거나 분산되지 않는 고분자화합물의 경우를 제외함)

2. 유해화학물질, 에폭시화합물, 아지리딘화합물 또는 신규화학물질인 단량체가 중량비 2% 초과하여 포함된 수평균분자량이 10,000 미만 고분자화합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의 세부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

제11조(등록의무 불이행한 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의 파기
2. 등록의무 이행계획의 보고
3. 등록의무 불이행 사실에 대한 공개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결과를 통보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신청시 제출 자료의 생략)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2에서 정한 양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2. 제2조제2호에 따른 분리중간체
3.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미만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해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4. 국제적으로 검증되어 인정되는 시험관 내 시험방법으로 얻은 결과로부터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5. 구조가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해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6. 기술적으로 시험이 불가능한 화학물질

7. 법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에 근거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물질
제13조(개별제출 사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등록대상기존화학
물질을 등록신청하려는 자들간에 이견이 해결될 수 없음을 말한
다.

1. 동일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출하려는 시험자료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차이가 있는 경우
2. 시험자료의 소유자가 공정하고 명확한 비용의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14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사유) 법 제17조제3항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를 말한다.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15조(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법 제19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회원국과 공동으로 유

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2.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하게 유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화학물질
3.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4. 영 제1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화학물질로서 유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화학물질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유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화학물질
6. 국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긴급하게 유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화학물질

제16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연구기관)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거나 인정된 시험연구기관

제18조(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 또는 하위사용자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적절히 통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관리대책의 수립 또는 그 이행
2.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에 대하여 위해성 관리방법의 권고
3. 기타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제19조(허가유예기간) ①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여되는 허가물질의 허가유예기간은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 제조·사용주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은 허가물질이 지정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사용주기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허가물질의 지정기준) ① 허가물질의 지정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제7조제1호에 따른 용도는 제외한다.

- ② 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른 허가물질의 구체적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허가물질의 지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거나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의 지정 및 허가유예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을 지정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서와 사회경제성분석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고유번호
2. 분류 및 표시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
4. 허가유예기간

제22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고시) ① 법 제27조에 지정하려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은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대체물질, 대체기술 등 대체 가능성 여부와 사회·경제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및 제한의 특정 용도를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서와 사회경제성분석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고유번호
2. 분류 및 표시
3. 유해성 또는 위해성
4. 제한·금지되는 용도 및 내용
5. 제한 또는 금지 사유

제5장 보 칙

제23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법 제38조제1항 제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신청
3.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변경신고
4. 법 제15조에 따른 개별제출의 확인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여부의 문의
6.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부동의 확인
7.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8.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9.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면제확인 신청
10. 법 제35조에 따른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정보제공
11.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 미고시 위해우려제
품의 생산·수입의 승인
12. 법 제45조에 따른 자료보호의 신청

제24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처리업무) ①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제조 등의 보고
2.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4.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변경신고
5.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6. 법 제32조에 따른 함유제품의 신고 및 면제확인
7. 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입
8.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9. 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

② 제1항의 업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자는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각종 서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또는 파일첨부의 방식으로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적 진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25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의한 업무처리 등) ①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제조·생산·수입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웹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 도구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형태의 문서와 동일한 효력

을 갖는다.

- ③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서명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제26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정보처리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화학물질정보처리센터는 외국의 유사 시스템과 조화를 보장하기 위해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추가적인 개발에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협력할 수 있다.

제27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위해성 저감 및 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28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시설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규 전문인력 8명 이상을 보유할 것
3. 최근 2년간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제29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4호에 따른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및 일정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계획 및 일정
2. 지정 요건
3. 비용 지원계획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 분야
2. 기관 내 별도 조직 및 정규인력 현황

3.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 등의 확보 현황
4. 최근 2년간 녹색화학 분야 업무 실적 및 근거자료
5. 녹색화학센터 지정에 따른 사업계획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화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적정한 규모의 지원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2. 신규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국내 개발
3. 친환경 화학물질 및 제품의 개발
4.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하는 물질 또는 대체기술 개발

② 녹색화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녹색화학센터의 사업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2월 말일까지
2.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다음 해 3월 31일까지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평가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 녹색화학센터의 구체적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이 고시한다.

제31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제30조제3항에 평가 결과 업무실적이 크게 부진한 경우
2. 제30조제3항에 평가 결과 기관의 성격상 녹색화학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3조(자료보호기간)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이란 15년을 말한다.

제34조(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화학물질의 상용명칭 또는 상품명, 제품의 명칭
2. 화학물질의 사용용도, 제품의 용도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취급시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등 화학물질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4. 제품의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5. 화학물질의 사고발생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6.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7.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8.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9.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료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의 접수 또는 등록 여부의 결정·통지
2.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4.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험계획서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5.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험방법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의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7.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제출명령
8.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및 결과의 통지
9.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
11.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
10.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1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1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
 13. 법 제31조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14. 법 제33조에 따른 제품의 위해성평가
 1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의 접수
 16. 법 제42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17.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또는 출입·검사 등
 18.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된 자료에 관한 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또는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19.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 신고의 접수
 20.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제조 등의 보고 또는 변경사항의 보고의 접수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의 접수

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해우려제품 내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제출의 접수 및 승인
 5.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 명령 또는 응급조치 명령
 6.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의 접수
 7. 법 제43조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또는 출입·검사 등
 8.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에 관한 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또는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9.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소재지·대표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의 확인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 사실의 확인

4.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 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의 접수
 6. 협회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에 관한 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또는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② 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절차) ① 법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 2015년 6월 30일
2.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경우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유해성심사 등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의 기간을 유예한다.

제4조(자율안전확인 후 신고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고(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면제확인을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자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신고 또는 신고면제확인의 기간을 유예한다.

제5조(자료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자료보호 중에 있는 자료는 법 제45조에 따라 자료보호기간 동안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 (제8조제2항 관련)

용도분류	구체적 내용
1. 흡수/흡착제 (Absorbents and Adsorbents)	가스나 액체를 흡수 또는 흡착하는 물질
2. 접착제 (Adhesive, binding agents)	두 종류의 표면이 접착되도록 하는 물질
3. 에어로졸추진제 (Aerosol Propellants)	압축 또는 액화 가스로서 용기에서 가스를 분사함에 따라서 내용물을 용기에서 분출되도록 하는 물질
4. 응축방지제 (Anti-condensation agents)	공기 중 표면에 응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물질
5. 부동액 (Anti-freezing agents)	동결되지 않도록 하는 물질
6. 접착방지제 (Anti-set-off and anti-adhesive agents)	접착을 방지하는 물질
7. 정전기발생 방지제 (Anti-static agents)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물질
8. 표백제 (Bleaching agents)	표백하거나 화이트닝을 하는데 사용되는 물질
9. 세제 및 세정, 세척제 (Cleaning/washing agents and additives)	표면에 오염물이나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물질. 단, 산업용 탈지제, 그리스제거제는 46. 탈지제, 용매 및 희석제에 해당
10. 염료안료 및 색소 (Colouring agents)	다른 물질에 발색하도록 하는 물질. 단, 식품첨가용 색소나 광 화학물질은 제외 또한, 이들 물질을 포함하는 최종 도료, 잉크 및 코팅제는 54. 도료, 잉크 및 코팅제에 해당
11. 복합제 (Complexing agents)	주로 금속이온과 같은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복합체를 형성하는 물질

12. 전도체 (Conductive agents)	전류를 유도하는 물질
13. 부식방지제 (Corrosion inhibitors)	부식을 방지하는 물질
14. 화장품 (Cosmetics)	화장품 및 세면용품에 사용되는 물질
15. 분진결합제 (Dustbinding agents)	미세고체입자나 파우더가 공기중 방전되지 않도록 하는 물질
16. 전기도금제를 포함한 금속 표면처리 약품 (Metal surface treatment products, including electroplating products)	금속도금 등 표면처리에 사용되는 물질
17. 화약, 폭발제 (Explosive)	매우 빠르게 다량의 에너지 및 팽창으로 인한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및 혼합물
18. 비료 (Fertilisers)	식물 영양에 필요한 성분을 공급하는 물질
19. 필러 (fillers)	고무, 플라스틱, 페인트, 세라믹 등에 첨가하는 비활성 및 비섬유성 미세입자로서 광택, 인장, 발색 등 기능향상을 위해 첨가하는 물질
20. 고정제 (Fixing agents)	섬유의 염료와 반응하여 색이 바래지 않도록 하는 물질
21. 내화/방염제.난연제 (Flame retardants and fire proventing agents)	연소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도록 표면처리하거나 투입하는 물질
22. 부유제 (Flotation agents)	정광에서 광물을 농축하거나 얻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
23. 주물용 flux (Flux agents for casting)	광물을 녹이거나 산화물 형성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물질
24. 발포제/기포제 (Foaming agents)	플라스틱이나 고무에 압축가스를 팽창시키거나 또는 액체를 기화시키거나 화학적으로 가스를 발생하여 기포를 형성하는 물질
25. 식품 및 식품첨가물 (Food/foodstuff additives)	맛, 향, 발색 또는 보존을 위해 식품 또는 동물사료에 첨가하는 물질

26. 연료 (Fuel)	연소반응제어장치 내 에너지를 발생하는 물질
27. 연료첨가제 (Fuel additives)	연료에 첨가되는 물질
28. 열전달제 (Heat transferring agents)	열을 전달하고 열을 제거하는 물질
29. 유압액 (Hydraulic fluids and additives)	압력을 전달하는 물질
30. 주입제 (Impregnation agents)	고체물질과 혼합되어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는 물질
31. 단열제 (Insulating materials)	전류, 열, 빛 또는 소리의 전달을 억제하는 물질
32. 합성출발물질 및 중간체 (Intermediates)	다른 화학물질을 합성하는데 사용되는 물질
33. 윤활유/첨가제 (Lubricants and additives)	두 표면사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투입되는 물질
34. 방오제, 방부제, 살균제 등 비농업용 농약 (Non-agricultural pesticides)	인간이나 환경에 존재하여 악영향을 미치는 유기체에 대한 작용을 없애거나, 저감하거나 제어하는 활성성분 및 조제품. 단, 농약, 의약외품이나 수의학제품은 제외
35. 향료 (Odour agents)	향을 내는 물질
36. 산화제 (Oxidising agents)	산소를 쉽게 발생하여 수소를 제거하거나 또는 화학반응에서 전자를 쉽게 받아들이는 물질
37. pH 조절제 (pH-regulating agents)	수소이온농도(pH)를 변경하거나 안정화하는데 사용되는 물질
38. 농약 (Pesticides)	식물 또는 식물작물을 유해한 생물로부터 보호하는 활성성분 및 조제품. 단, 비료는 제외
39. 의약품/의약품중간체 (Pharmaceuticals)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활성성분과 중간체
40. 사진현상재료 등 광화학물 (Photochemicals)	영구적인 사진이미지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물질
41. 촉매등 공정조절제 (Process regulators)	공정속도를 조절하는 물질

42. 환원제 (Reducing agents)	산소를 제거하고 화학반응에서 전자를 제공하는 물질
43. 복사용 물질 (Reprographic agents)	영구적인 이미지를 생산하는 물질
44. 반도체 (Semiconductors)	절연체와 금속간 전기저항을 갖는 물질로서 빛, 열 또는 전자기장에 의해 변화하여 기전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
45. 연화제/경화제 (Softner/hardner)	감촉을 좋게하거나 마감공정을 위해 사용되거나 유연성이나 작동성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
46. 탈지제, 용매 및 희석제 (Cleaning agent, solvent, thinner)	녹이거나 희석시키거나 추출, 탈지를 위해 사용되는 물질
47. 안정제 (Stabilisers)	자발적인 변화 및 노화를 막거나 늦추는 물질
48. 계면활성제/표면활성제 (Surface-active agents)	액체의 표면 및/또는 계면장력을 저감시켜 분산력, 세척력, 습윤력을 향상시키는 물질
49. 가죽처리 약품 (Leather tanning, finishing, impregnation and care products)	탄닌제, 가죽마감제, 가죽케어 등 가죽 처리 물질
50. 점도조정제 (Viscosity adjusters)	점도를 조절하는 물질
51. 가황제/가황촉진제 (Vulcanising agents)	고무에 첨가되어 가황을 촉진하는 물질
52. 용접제 (Welding and soldering agents)	용접 및 솔더링에 사용되는 물질
53. 단량체 등 고분자원료 (Monomer etc.)	고분자 중합 및 고분자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 단, 최종의 고분자는 59. 합성수지 등 고분자 물질에 해당
54. 도료, 잉크 및 코팅제 (Coatings and paints, ink, paints)	도료 및 잉크, 코팅 제품. 단, 이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물질은 포함되지 않음
55. 이온교환수지 (Ion exchange resin)	이온교환을 할 수 있는 이온을 지닌 합성수지

56. 전기전자재료 (Electricity and Electronics materials)	전기전자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단, 반도체 물질은 44의 “반도체” 용도에 해당
57. 섬유 및 섬유처리약품 (Textile and textile treating agents)	섬유 및 섬유처리약품
58. 건조 및 분리제 (drying and separation agents)	건조 및 두 가지 이상 물질을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물질
59. 합성수지 등 최종 고분자 물질 (Final polymer and its preparation)	고분자 레진, 합성수지, 고무, 플라스틱 등 중합된 최종 형태로의 고분자 물질. 단, 고분자 중합 및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은 53의 “단량체 등 고분자원료” 에 해당
60. 기초 금속 및 합금 (Base metals and alloys)	기초금속 및 금속에 다른 금속 또는 원소를 혼합하여 얻는 금속 성질을 띠는 물질
61. 종이 및 보드 염색, 마감, 보강제품 (Paper and board treating agents)	종이 및 보드 처리약품
62. 광택제 및 왁스 혼합물 (Polishes and wax blends)	표면에 광택을 부여하거나 방수, 절연, 방부 효과를 위해 적용되는 왁스 물질
63. 건축용 물질 및 첨가제 (Construction materials additives)	건축용 자재에 사용되는 물질
64. 연구시험용 물질 (R & D chemicals)	연구시험을 목적으로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물질
65. 기타 (Others)	상기 용도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별표 2] <제정 2014.00.00>

등록신청자료 생략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량 (제12조제1호 관련)

구분	제조·수입량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톤 미만
2020년 1월 1일부터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

유독물질의 지정기준 (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구분	지정기준
가. 설치류에 대한 급성 경구독성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3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나. 설치류에 대한 급성 경피독성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1,0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다. 설치류에 대한 급성 흡입독성	1) 기체나 증기로 노출시킨 경우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2,500피피엠(2,500ppm) 이하이거나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2) 분진이나 미립자로 노출시킨 경우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라. 피부 부식성/자극성	피부에 3분 동안 노출시킨 경우 1시간 이내에 표피에서 진피까지 괴사(壞死)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마. 어류 또는 물벼룩, 조류에 대한 급성독성	1) 어류에 대한 시험에서 시험어류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96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2) 물벼룩에 대한 시험에서 시험물벼룩 수의 반이 유영저해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EC50, 48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3) 조류(藻類)에 대한 시험에서 시험조류의 성장률이 반이 감소될 수 있는 농도(IC50, 48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p>바. 어류 또는 물벼룩, 조류에 대한 만성독성</p>	<p>무영향농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영향을 주는 농도(ECx)가 리터당 0.01밀리그램(0.01mg/l) 이하인 화학물질</p>
<p>사. 반복노출독성</p>	<p>1) 사람에게 대한 사례연구 또는 역학조사로부터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킨다는 신뢰성 있고 양질의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p> <p>2) 시험동물을 이용한 적절한 시험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노출농도에서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또는 강한 독성영향을 일으켰다는 소견에 기초하여,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p>
<p>아. 변이원성</p>	<p>1) 사람에게 대한 역학조사연구에서 양성인 증거가 있는 물질로서, 사람의 생식세포에 유전성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p> <p>2) 포유동물을 이용한 유전성 생식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인 화학물질</p> <p>3) 포유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이고,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p> <p>4) 노출된 인간의 정자세포에서 이수체 발생 빈도의 증가와 같이, 사람의 생식세포에 변이원성 영향을 보여주는 시험에서 양성인 물질</p>
<p>자. 발암성</p>	<p>1)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로서, 주로 사람에서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p> <p>2)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로서, 주로 시험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한 물질이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p>

	가 있는 화학물질
차. 생식독성	1)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사람에 대한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물질
카. 기타	1) 위의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독물질을 1퍼센트(1%) 이상 함유한 화합물 및 혼합물
	2) 위의 아목 또는 차목에 해당하는 유독물질을 0.1퍼센트(0.1%) 이상 함유한 화합물 및 혼합물

비고 : 1. 흡입독성의 단위는 기체 또는 증기로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ppm으로, 분진 또는 미립자로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mg/L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ppm 또는 mg/L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text{mg/L} = (\text{ppm} \times \text{분자량} / 24.45) \times 1 / 1,000 (\text{상온, 상압})$$

2. 수생생태독성을 평가할 때에 대상 물질이 수계(水界)에서 쉽게 흡착되거나 분해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행한 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유독물로 지정할 수 있다.
3. 어독성 시험자료가 96시간 기준이 아닌 48시간 기준인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계수 2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어종(魚種)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서식 어류를 우선하여 고려한다.
4. 해당 화학물질의 분해산물이 제1호의 항목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항목별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라도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 예상 노출량,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유독물질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허가물질의 지정기준 (제20조제2항 관련)

1.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구분	구체적 지정기준
가. 발암성	1)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로서, 주로 사람에서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2)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로서, 주로 시험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한 물질이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나. 변이원성(돌연변이 이상)	1)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연구에서 양성인 증거가 있는 물질로서, 사람의 생식세포에 유전성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2) 포유동물을 이용한 유전성 생식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인 물질 3) 포유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이고,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 4) 노출된 인간의 정자세포에서 이수체 발생 빈도의 증가와 같이, 사람의 생식세포에 변이원성 영향을 보여주는 시험에서 양성인 물질
다. 생식독성(생식능	1)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력 이상)	것으로 판단할 만한 사람에 대한 증거가 있는 물질 2)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물질
라. 내분비계 장애	사람의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2.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화학물질

구분	구체적 지정기준
가. 1)에서 3)까지의 기준에 모두 해 당하는 경우	1) 잔류성 : 가)에서 다)까지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 가) 수중에서 반감기(半減期)가 40일을 초과 나) 퇴적물에서 반감기가 120일을 초과 다) 토양에서 반감기가 120일을 초과 2) 생물축적성 : 생물농축계수(BCF)가 2,000을 초과 3) 독성 : 별표 2에서 정한 유독물 지정기준에 해당
나. 1) 및 3)의 기준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잔류성 : 가)에서 다)까지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 가) 수중에서 반감기가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나) 퇴적물에서 반감기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다) 토양에서 반감기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2) 생물축적성 : 생물농축계수(BCF)가 5,000을 초과

3. 제1호 및 제2호의 화학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과 함께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물리적·

화학적 특성,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 국제적 관리기준, 사회·경제적 분석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경고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르되,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완전히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1차 위반으로 본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	------	-------------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41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법41조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기관 내에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41조제1항제3호	개선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제30조제3항에 평가 결과 업무실적이 크게 부진한 경우	법41조제1항제4호	개선명령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제30조제3항에 평가 결과 기관의 성격상 녹색화학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41조제1항제4호	개선명령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호	300	500	1,000
나.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별 제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 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2호	600	800	1,000
다.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3호	600	800	1,000
라.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관 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4호	600	800	1,000
마. 제44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5호	600	800	1,000